

수 신 회원사

참 조

제 목 「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, 더민주, 의안번호 2218316, '26. 4. 14 / 임종득, 국민의힘, 의안번호 2218370, '26. 4. 16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'26. 5. 7(목)까지 협회 사무처(FAX 032-428-7334) 또는 이메일(gh127@kosca.or.kr)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○ 의안번호 2218316

-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청구를 위한 이의신청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,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(안 제28조, 제28조의2 및 제31조의 3)
-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한 특약 등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(안 제29조,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)

○ 의안번호 2218370

-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함(안 제10조제2항)

- 붙임 1. 국가계약법 개정안 각 1부.  
2. 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incheon.kosca.or.kr) - 시·도소식-공문/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
회 장 조 홍 수



---

담당자 사원 구태형 대리 임윤환 부장 조태원 실장 문승주

시행 전건협 인천 제331호(2026. 5. 4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gth127@kosca.or.kr